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59

발의연월일: 2025. 6. 4.

발 의 자:차규근・김재원・정춘생

서왕진 · 김선민 · 신장식

강경숙 • 이해민 • 김준형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え)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u>	국무총리		
<u>부장관 소속하에</u> 공공기관운영	소속으로		
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			
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장관이</u> 위원장이 된	<u>국무총리가</u> .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	4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			
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의 추천	국무총리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